

제 1521 호  
1990. 10. 25

편집인: 공보관 유 천 수  
전화: 731-8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규 칙	
제2358호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증개정규칙 .....	3
제2359호 서울특별시보안업무시행세칙증개정세칙 .....	22
● 고 시	
제 352 호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변경결정 .....	24
제 35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사계획인가고시내용증일부변경고시 .....	24
● 공 고	
제 553 호 건설기술용역사업집행계획공고 .....	25
제 554 호 K·S표시정지처분공고 .....	26
제 555 호 일반주거지역내대학입시계학원건축가능구역지정공고 .....	26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2008

● 구 고 시

제 18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강남) .....	26
제 3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서대문) .....	27
제 3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서대문) .....	27
제 3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천,관광)실시계획변경인가(서대문) .....	31
제 3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서대문) .....	31
제138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인가고시(도봉) .....	32

● 구 공 고

제 92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구토) .....	40
----------------------------	----

● 시교육위원회 고시

제 36 호 학교시설사업준공 .....	40
제 37 호 학교시설사업준공 .....	41
제 38 호 학교시설사업승인 .....	41

● 경찰서 공고

제 1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송파경찰서) .....	42
제 1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노원경찰서) .....	42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세무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10. 23

서울특별시장 고 권 10

●서울특별시규칙제2358호

서울특별시세무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세무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7호  
서식)”를 “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정  
리부(별지 제7호서식)”로 하고 동조 제3  
항,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과오납금  
정리부”를 “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시세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  
무면제) 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의무의 면제처분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  
들 불납 결손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  
해 년도내에 면제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하  
거나 면제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협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 보  
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미수  
납액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32조중 “제13호서식”을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중 “제14호서식”을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35조중 제1항중 “제15호서식”을 “제14호  
서식”으로 하고 “제16호서식”을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제17호서식”을 “제16호서식”  
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채납정리) ①납기한이 경과되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채납처분의  
인계 또는 징수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즉  
시 별지제17호서식(갑)지방세 채납정리표  
(구청장관리용) 및 동 서식(을) 지방세  
채납정리표(동장관리용) 2부를 전자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납정리표 1부(갑)는 구청 세  
목 소관과에서, 1부(을)는 주소지 동장에  
게 송부하여 당해 채납지방세에 징수 또  
는 감액, 시효소멸 등 처분이 종료될 때  
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  
관리할 수 있다.

③주소지 동장은 채납정리표(을) 해당관  
에 직인날인하여 채납자의 채납세금에 대  
한 징수, 감액, 시효 소멸등 처분이 종료  
될 때까지 당해 납세자 개인별 주민등록  
표 비닐 내부에 삼일 관리하여야 하며(전  
출시에는 동봉 송부하여야 한다) 구청장  
은 채납세금에 대한 징수, 감액, 시효소멸,  
압류에 의한 시효연장 기타 처분사항을  
은행수납통보일 또는 처분일 의원까지 해  
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호중 “채납처분표”를 “지방세채납  
정리표”로 한다.

제40조중 “제19호 서식(갑, 을)”을 “제18호  
서식(갑, 을)”로 한다.

제43조중 “제20호서식”을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제21호서식”을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중 “제22호서식”을 “제21호서식”으로 동항 제2호중 “제23호서식”을 “제22호서식”으로 동항 제3호중 “제24호서식”을 “제23호서식”으로, 동항 제4호중 “제25호서식”을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46조중 “제26호서식”을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27호서식”을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중 “제28호서식”을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9호서식”을 각각 “제2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27호서식”을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제30호서식”을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제31호서식”을 “제30호서식”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제32호서식”을 “제31호서식”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제29호서식”을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중 “제33호서식”을 “제32호서식”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제34호서식”을 “제33호서식”으로 한다.

제61조중 “제29호서식”을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제35호서식”을 “제34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29호서식”을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제36호서식”을 “제35호서식”

으로 한다.

제67조중 “제37호서식”을 “제36호서식”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제38호서식”을 “제37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39호서식”을 “제38호서식”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제40호서식”을 “제39호서식”으로 한다.

제71조중 “제41호서식”을 “제40호서식”이라 한다.

제72조중 “제42호서식”을 “제41호서식”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중 “제43호서식”을 “제42호서식”으로 한다.

제75조중 “제44호서식”을 “제43호서식”으로, “제45호서식”을 “제44호서식”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중 “제46호서식”을 “제45호서식”으로 한다.

제77조중 “제47호서식”을 “제46호서식”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3호중 “제48호서식”을 “제47호서식”으로, “제49호서식”을 “제48호서식”으로 하고, 동항 제5호중 “제50호서식”을 “제49호서식”으로 한다.

제80조중 “제51호서식”을 “제50호서식”으로 한다.

제84조중 “제52호서식”을 “제51호서식”으로 한다.

제86조중 “제53호서식”을 “제52호서식”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제54호서식”을 “제53호서식”으로, “제55호서식”을 “제54호서식”으로 한다.

제88조제2항중 “제56호서식”을 “제55호서식”으로 한다.

<p>제89조중 “제57호서식”을 “제56호서식”으로 한다.</p> <p>제92조제2항제3호중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사업서사”를 “감정평가사, 법무사”로 한다.</p> <p>제96조제1항중 “제58호서식”을 “제57호서식”으로, “제59호서식”을 “제5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㉔구성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사실을 인지하거나 취득신고서, 매각통지서, 기타의 문서에 의한 취득확인을 하였을 때는 이를 취득세과세 자료처리부에 등재한 후 과세처리 또는 자진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등록에 관한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03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수납 사무처리부(별지 제59호서식)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란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여부, 취득세, 등록세 부족신고 여부, 기일내 자진신고여부등을 확인 표시하고 고지발부 대상을 가려 과세처리하여야 한다.</p> <p>제1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영수필통지서상의 내용은 별지 제59호서식(감), 등록세수납부(자납)와 별지 제59호서식(을) 등록세 수납사무처리부등 전사작성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 과세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5년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중 세액이 인쇄된 정액세는 수납부만 작성할 수 있다.</p> <p>제104조제2호중 “제61호서식”을 “제60호서식”으로 한다.</p> <p>제10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자동차세 납세필증교부(수불)대장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3</p>	<p>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p> <p>“[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 감]” 및 “[별지 제17호 서식을]”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p>“[별지 제19호 서식 감, 을]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 감,을] 내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p> <p>“[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p> <p>“[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제23호 서식] 내지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한다.</p> <p>“[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p> <p>“[별지 제36호서식] 내지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 내지 [별지 제55호 서식]”으로 한다.</p> <p>“[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별지와 같이 한다.</p> <p>“[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으로 한다.</p> <p>“[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 제59호서식 감] 및 [별지 제59호서식 을]”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p>“[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6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79호서식 부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별지 제8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지 제7호서식]

세입과오납금내역및처리내역정리부

연월	과오납내역							결재		과오납금처리내역							결재		지급및통지사항			비고					
	연도	월	과오납액		과오납차액	과오납잔액	과오납연월일	사유	계	제장	과장	조정	과오납환입액		구분	환입액		계	제장	과장	일자		수령가	대조	자인		
			본세	가산세									과오납	환입액		환입액	정정									정정	정정
연도	월	과오납액	과오납차액	과오납잔액	과오납연월일	사유	계	제장	과장	조정	과오납환입액	과오납환입액	구분	환입액	환입액	정정	정정	정정	정정	계	제장	과장	일자	수령가	대조	자인	
월	계																										
연도	계																										
총	누	계																									

구분	과오납금 결의액	총 당 액	구과개정액	(A) 지급명령액	(B) 환 송 분	(A-B=C) 실지급명령액	(D) 지급및통지액	(C-D=E) 차인미지급액	결 재		
전월까지의누계									계	제장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누계											

[별지 제9호서식]

채 납 액 점 리 부

종

수 납 번 호	납세의무자 주 소 성 명 및 주 인 등 록 번 호	년도 기분 (월)	과 세 물 건	세 목	본세	납 기 경 과 가 산 금 (5%)	증 가 산 금										합 계	수 납 인
							1 월 경과 (2%)	2 월 경과 (2%)	3 월 경과 (2%)	4 월 경과 (2%)	5 월 경과 (2%)	6 월 경과 (2%)	7 월 경과 (2%)	8 월 경과 (2%)	9 월 경과 (2%)	10월 경과 (2%)		
				세 원														
				방위세														
				계														
				세														
				방위세														
				계														
				세														
				방위세														
				계														

190mm x 268mm (신문용지 54g / m<sup>2</sup>)

43-8

제1521호 서

본 1990. 10. 25





[별지 제17호서식 이면] 감				
제 납 정 리 보 고			처 리 전 망	조사자인
과 장	계 장	년월일		
<u>주 거 확 인</u>			<u>재 산 확 인</u>	
1. 주민등록	유	무	1. 가옥대장	유 무
2. 거주사실	유	무	2. 토지대장	유 무
3. 행 선 지			3. 차량대장	유 무
4. 전 출 구 분 : 신고, 무단			4. 파세구본자료 : 신고 직권	
	19			19
동 장		㉑	소 속	성 명 ㉑
			직	
<u>극 권 자 확 인</u>			<u>재 조 사 확 인</u>	
1. 가옥, 자가, 세방, 세가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2. 생활상황, 극빈, 구호대상			확인함	
3. 기 타				
	19			19
동 장		㉑	소 속	성 명 ㉑
			직	

[별지 제17호서식 율]												
<b>지방세 체납 정리표</b> (주소지동장관리용)												
(전 면)		관		구		동		세목		과세번호		
주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영업장소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 호				납세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목	년도	납기	독 축		체 납 세 액							합 계
			발부일	납기한	본세		가 산 금					
							1 차	2 차	3 차	4 차	.....	
1. 체납사유						과세지동장확인			직 인			
2. 조 치						(진출시통보)						
3. 처리전망						물건지와 주소지가 다를때도 통보						
						통보장소						
190mm×268mm(신문용지 54g/㎡)												



[별지 제34호서식]

교 부 청 구 서

귀 하 (사건번호: )

채 납 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교 부 청 구 액	금 원 정
-----------	-------

명 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비 고

지방세법 제34조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받고자 국제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19    년    월    일

구 청 장                    ㉞

190mm×268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6호서식]									
<u>결 손 처 분 표</u>									
결 재			지방세법 제29조제 항제 호에 의거 결손처분요자						
징수관	과 장	계 장	합니다.						
			년 월 일						
			과직 성명						
제 납 자	주소			상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 지 시 번 호	년 도	기 분	납 기	제 목	세 액			파 세 물 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거 주 조 사									
재 산 조 사									
허가사항 및 기타사항									
확 인 및 조 치									
거 주 사 실 확 인					조 화 사 항				
동 장	사 무 장	지역담당 직 원	통 장	조 화 요 지					
				화 신 요 지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									

2015

[별지 제59호서식 감]

월등복세수납부(자납)

부

일반		등 록 세 자 진 납 부 사 항						
연호	①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등기등록내역		세율	감면세액	자납내역	
			등기목적	물건지			세액	내역
연호	② 전소유자 주소	성명	재산종류	과세표준액				납부서면호
					/		등 록 세	
					/		방 위 세	
					/		등 록 세	
					/		방 위 세	
					/		등 록 세	
					/		방 위 세	
					/		등 록 세	
					/		방 위 세	
					/		등 록 세	
					/		방 위 세	
					/		등 록 세	
					/		방 위 세	

제1521호 시

본 1390. 10. 25 43-15

[별지 제59호서식, 음]

등록세수납사항사무처리부

동

인원 연차	동				목				세				자				진				납				부				사				항				결		재
	①납세의무자주소		성명		동기등록내역		감면사항 및 비율		은		행		통		보		동기소통보		동기등록일		부족납부분		③추징년월일		취득세과세		⑤과제년월		계장		과장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기등록내역	출건지	세율	감면세액	세목	세액	납부년월일	납부서번호	세액	납부년월일	확인인	동기등록번호	결정부속세액	추징번호	고지대수	대상여부	과제번호	계장	과장																
	①							등록세									③	대	상	⑤																			
	②							방위세									④	미	대	상	⑥																		
	①							등록세										③	대	상	⑤																		
	②							방위세										④	미	대	상	⑥																	
	①							등록세											③	대	상	⑤																	
	②							방위세											④	미	대	상	⑥																
	①							등록세												③	대	상	⑤																
	②							방위세												④	미	대	상	⑥															
	①							등록세													③	대	상	⑤															
	②							방위세													④	미	대	상	⑥														

제1521호 시

표 1990. 10. 25



[별지 제61호서식]

자동차 납세필증교부(수불)대장

결 계			년월일	적 요	수 불 사 항 (배수)			수 불 자		
과 장	계 장	계			인쇄	복출	잔량	주소	성명	서명날인

[별지 제77호서식]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

세목별		감면근거	합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감면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구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	계													
취득세	소	계												
	토	지												
	건	축												
	기	타												
등면주	특히	세												
	민	세												
재산세	소	계												
	건	축												
	기	타												
자동차	차	세												
농지	지	세												
도축	축	세												
마권	권	세												
담배	소	비												
중합	로	지												
도시	계	획												
소방	공	용												
시설	시	설												
사업	업	소												

(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동법에 직접 규정되어 감면된 것에 한한다.

380mm×268mm(신문용지 54g/㎡)

43-18

제1521호 시

본 1990. 10. 25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시행세칙중 개정세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10. 23.

서울특별시장 고 건 ①

◎서울특별시규칙2359호

서울특별시보안업무시행세칙중개정세칙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본청, 산하기관"을 "서울특별시본청, 구 및 그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의 보안업무"를 "서울특별시 및 구의 보안업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등) ①협의회는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하수국장,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감사관,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으로 구성하고, 구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과 구청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0인 이내의 국·실·과장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구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제2항의 협의회또는 구협의회의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회 또는 구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안의 성질에 따라 위원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④협의회 또는 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협의회 또는 구협의회를 대표한다.

⑤협의회 또는 구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당해 위원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협의회 및 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구협의회에 각각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총무과 서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보안담당자가 되며, 구협의회의 간사는 총무과 총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보안담당자가 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전청 : 내무국장
2. 서울특별시 본청 : 총무과장
3. 경 찰 국 : 경무과장
4. 구 청 : 총무국장
5. 사업소 : 보안업무담당부장 다만, 부가 없는 사업소는 보안업무담당과장이 되되, 부와 과가 없는 사업소는 보안업무담당계장이 되고, 부, 과 및 계가 없는 당해 기관장의 차하급자가 되며, 사업소 산하 부서의 보안담당관은 당해 사업소장이 사업소에 준하여 지정한다.
6. 동사무소 : 사 무 장
7. 소방본부 : 소방행정과장
8. 경 찰 서 : 경 찰 과 장
9. 소 방 서 : 소 방 과 장
10. 지방공사 : 보안담당부장, 다만, 부가 없는 경우 지방공사는 보안 담당과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직근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

행하되, 이 경우 직근상급자가 기관장인 때에는 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분임 보안담당관의 지정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서울특별시본청 : 각 실, 국, 관의 주무과장
2. 구 청 : 각실장 및 각국 주무과장과 보건소 사무장
3. 기타의 기관 :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②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한 수 있다.

③본청, 실, 국, 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산하사업소의 보안업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안담당관의 업무관계) ①서울특별시 전체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6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과 지방공사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며 각 기관 자체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6조의 업무수행과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

②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 당해 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업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전체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전체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과 지방공사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안교육) ①각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년2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입용자 및 전입자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 전체 보안담당관은 산하기관에 대하여 당해 연도 보안업무시행계획에 따라 보안실무교육을 매년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장 및 소방학교장은 대교육과정마다 보안교육 과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4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암호 및 음어자재는 비밀캐비닛 내에 별도의 자체함을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현제용과 과거용, 미래용으로 구분하되 자체외의 물건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관책임자는 음어자재를 주1회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월1회이상 보관책임자의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제46조 및 제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음어자재의 운용) ①Ⅱ급 비밀 이상의 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지 못한다. 다만 연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Ⅲ급비밀 및 대외비 또는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음어화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담호기 또는 비화기를 설치한 때에는 승인된 범위안에서 평문으로 수발할 수 있다.

③현제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

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체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7조(자체 보안검사 실시) ①시장은 서울특별시 전체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안업무의 감독 및 비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년1회이상 정기 보안검사를 실시하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안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전체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담당하는 직원으로 업무소관별로 감사반을 편성한다.

③구청장, 소방본부장, 사업소장 및 지방공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352호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0. 2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어린이공원	성동구	988.1	988.1	0	폐지
		성수2가				
		13-28				

나. 관계도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고시제35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중일부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86호(89.11.17)로 실시계획인가고시한바 있는 도시계획사업(도로) 양평교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중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와 영등포구청(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0. 24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486호(89. 11. 17)와 동일함

나. 변경되는 내용: 토지조서(별첨)



양평교 건설공사 변경고시 요청내역

1) 변경전

소재지 :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37-2	대	56.6		이득춘외 2인	동작구 대방동 391-270
37-3	"	78.6		"	"

2) 변경후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이용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37-2	대	56.6	공장용지	이득춘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1-270
				이득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62-22
				이득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2
				(근저당권자 : 양평2동 새마을금고 크로바 아파트 1동 309호)	
37-3	대	78.6	공장용지	이득춘	서울 양평동 1가 153-1)
				이득복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1-270
				이득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62-2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2	
				크로바 아파트 1동 309호	
				(근저당권자 : 양평2동 새마을금고 서울 양평동 4가 153-1)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553호

건설기술용역사업집행계획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10. 22.

서울특별시장 고 건

- 다 음 -

1. 용역명 : 마포중계처리장 건설 실시설계 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가.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7번지 일원
  - 나. 사업기간 : 1990. 12 ~ 1993. 6
4. 총사업비 및 당해년도 예산규모
  - 가. 총 사업비 : 358억원
  - 나. '90사업비 : 4.88억원
5. 입찰예정시기 : 1990. 12
6. 기타용역참가에 필요한 사항

가. 용역업자의 선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방법에 의거 선정

나. 참가대상업체 : 환경처 장관에게 쓰레기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과학기술처에 종합건설기술 용역업등록을 필한 업체

●서울특별시공고제554호

K.S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시정지 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90. 10. 24

서울특별시

다 음

1. 업체명 : (주) 화성코리아
2. 대표이사 : 김기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999-14
4. 규격번호 : KSB1553
5. 규격명 : 기어형축이음
6. 종류, 등급 : 양쪽보통형
7. 표시정지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처분사유 : KS 규격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555호

일반주거지역내대학입시계학원  
건축가능구역지정공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2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이하인 대학입시계학원의 건축가능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990. 10. 26.

서울특별시

1. 지정내용

구 별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4개구정(9개구역)	448,416.5	
중랑구	목1동 174-2일대	3,878.3	
양천구	신정1동 1030-1일대	35,513	
	신정3동 1191-4일대	14,513	
	신정4동 543-1 일대	117,762	
	신정5동 942-12일대	50,740	
	신월2동 500-21일대	8,159	
은평구	녹번동 82-25 일대	114,000	
	갈현동 456-27일대	96,600	
송파구	석촌동 276일대	7,722.2	

2. 판제도서

-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와 관할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구 고 시

●강남구고시제1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강남구 역삼동 759-1외 41필지상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2조 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0. 10.

강 남 구 청 장

1. 민영주택건설 사업승인 내역

- 가.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p>나. 사업주체 : 미원직장주택조합                  다. 사업시행지위치 : 강남구 역삼동 759-1의 4필지                  라. 대지면적 : 2,405.8㎡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동 9층 63세대                  바. 건축연면적 : 6,907.59㎡                  사. 사업비 : 213,516천원                  아. 사업기간 : 90. 10~91. 11</p> <p>2. 도면 : 별첨과 같은(생략)                  3. 기타 :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보관</p> <p><b>◎서대문구 고시제33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b></p> <p>1. 64. 7. 8 서울시 공고 제360호로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처분된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27의 9-129의 56의 1개소간 도시계획사업용 도시계획법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공고 제84호(90. 9. 18)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용,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10. 서대문구청장</p>
------------------------------------------------------------------------------------------------------------------------------------------------------------------------------------------------------------------------------------------------------------------------------------------------------------------------------------------------------------------------------------------------------------	----------------------------------------------------------------------------------------------------------------------------------------------------------------------------------------------------------------------------------------------------------------------------------------------------------------------------------------------------------------------------

공고번호	사업의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서대문구 공고 제84호	서대문구 북아현동 · 127의 9- 129의 56 · 144의 24- 144의 7	도시계획사업 (도로)	북아현동 127의 9-129의 56의 1개소 도로정비공사	도로 :  B=6m, L=48m

<p>가. 사업의 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                  가일로부터 91. 12. 30                  다. 수용토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조서 참조                  라. 토지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조서 참조                  마. 보상계획                  1) 보상시기 : 1990. 10월부터                  2)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체결 요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협의취득                  ○ 보상 지급방법</p>	<p>건물 : 계약후 보상금 전액 지급                  3) 협의 불응시 토지 수용법 제 25조2                  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p> <p><b>◎서대문구 고시제35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b></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159호(83.3.19)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대문구 연희동 532의 1-533의 196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 공고 제84호(90.9.22)로 공람·공고하고,</p>
------------------------------------------------------------------------------------------------------------------------------------------------------------------------------------------------------------------------------------------------------------------------------------------------------------------------------------------------------------------------------------------------------------------------------------------------------------------------------------------------------------------------------------------------------	------------------------------------------------------------------------------------------------------------------------------------------------------------------------------------------------------------------------------------------------------------------------------------------------------------------------------------------------------------------------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제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0.  
서대문구청장

- 다 - 음 -

공고번호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사업의명칭	사업의규모
서대문 공고 제84호	연희동 532의 1 533의 196간	도 로	연희동 532의 1- 533의 196간 도로개설공사	도로 : B=6m L=100m

가. 사업의 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1. 12. 20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조서참조  
 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조서 참조

토 지 조 서

당초지번	지목	면적(㎡)	수 용		소 유 자		비고
			지번(분할)	면적(㎡)	주 소	성 명	
529-34	대	36	-34	36	서울특별시		
529-20	"	60	-35	12	529-20	김도길	
529-21	"	73	-36	9	529-21	유동석	
525-8	"	69	-10	5	525-8	정일적	
524-7	잡	43	-18	9	국(국세청)		
519-15	대	79	-227	4	510-15	강세용	
523-10	대	73	-61	11	523-10	권오옥	
523-9	"	126	-62	6	523-9	장태일	
523-11	"	86	-63	22	523-11	이순식	
523-12	"	112	-64	2	523-12	서영균	
523-14	"	79	-65	2	523-13	정성호	
522-20	"	26	-23	1	522-20	이한옥	
522-4	"	116	-24	2	용산동 2가 8	려진근	
520-160	"	66	-117	15	520-160	이희수	
520-59	"	43	-178	15	520-29	이수재	
523-196	"	18	-196	18	서울시		

당초지번	지목	면적(㎡)	수용		소유자		비고
			지번(분할)	면적(㎡)	주소	성명	
533-70	대	69	-306	17	533-70	양춘식	
533-193	"	69	-307	17	519-108	김호	
533-71	"	126	-308	28	533-71	서일유	
533-72	"	99	-309	13	연외동경향아파트-125	주기환	
533-73	"	96	-310	8	533-73	심상보	
-125	"	96	-311	4	533-125	이수보	
537-72	"	76	-169	1	537-72	홍성일	
537-78	"	93	-170	5	537-78	곽용현	
537-1	"	139	-171	17	537-1	권일승외면	
건물조서							
물건지	구조	용도	건축면적(㎡)	수용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29-20	연와조와즙	주택	계 41.16	1층 7	529-20	김도길	대문1식 담장 L=1.5m
			1층 35				
			지층 6.61				
	물치	3	2				
	화장실	3	3				
529-21	연와조 세멘와즙	주택	계 51.83	1층 8	529-21	유동석	대문1식 담장 L=3.8m
			1층 44				
			지 44				
	물치	16	6				
	(화장실)						
525-8	세멘부릭 쓰레트	주택 화장실	1층 52 2	11 2	525-8	정대영	대문1식 담장 L=2.2
524-7	세멘부릭 와즙	주택	43	15	524-7	"	무허가
519-15	세멘부릭 쓰레트	화장실	1	1	519-15	강세용	대문1식 라일락1주
523-10	세멘부릭조 세멘와즙	주택	1층 43	2	523-10	권오욱	대문1식
		물치	16	16			
		화장실	5	5			

물 건 지	구 조	용 도	건축면적(㎡)	수용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523-11		물 치	4	2	523-11	이순식	대문1식 담장L=6m
523-14	세멘부력 스레트	물 치	4	2	523-14	정성호	대문1식 담장L=6m
522-20	세멘부력 와 굽	주 택	1층36	1	522-20	이문옥	무 허 가
520-160	세멘부력 기 와	주 택	1층 43 물치 9 화장실 2	5 9 2	520-160	이희수	대문1식
520-59	세멘벽돌 스라브	주 택 및 상 가	계 114 1층 57 2층 57	계 58 1층 29 2층 29	520-59	이수재	무 허 가
533-70	연 와 조 세멘와굽	주 택	1층 33 물치 3 화장실 2	3 3 2	533-70	양춘석	대문 1식 담장L=1m
533-193	"	주 택	1층 33 물치 3 화장실 3	3 3 2	533-193	김 호	대문 1식 담장L=1m
533-71	"	주 택 물 치	1층 64 8	3 8	533-71	서일웅	대문1식 담장L=1.8m 대추나무 1식
533-72	연 와 조 와 굽	주 택 물 치 (화장실)	1층 47 2	4 1	여의도동 28 광장아파트 7-1205	주기한	대문1식 담장L=2m
533-73	"	주 택 물 치	1층 58 5	10 1	533-27	심상보	
533-125					533-125	박정자외3인	대문2식
537	연와조와굽	주 택 물 치	1층 44 7	9 3	537	강성일	
537-72	"	주 택	1층 50	22	537-72	홍성일	
537-78	연 와 조 세멘기와	주 택	1층 43	5	537-78	곽용한	

<b>◎서대문구고시제37호</b> <b>도시계획사업(도로,하천,광장)실시계획</b> <b>변경인가</b>			1990. 10. 서대문구청 - 다 - - 음 -		
1. 서울특별시 고시제159호(83.3.19)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와 같은 고시 제83호(78.3.9)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하천) 및 건설부고시 제 169호(76.10.26)로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7호(77.2.10)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광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7호로 실시계획인가 한바 있는 서대문구 연회동 541의 1-542의 77호간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천, 광장)실시계획을,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연회동541의 1-533의196간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천, 광장)	사천교-홍남교간 도로개설공사	도로: B=8m L=273m 하천: 개량장터 L=273m 광장: 1식	
			가. 사업의 시행자: 서대문구청장 나. 사업의 착수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당초 90. 12. 31 변경 91. 12. 31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조서 참조(추가) 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조서 참조(추가)		
<b>토 지 조 서</b>					
지 번	지 목	오	장		
			수용토지	면적(㎡)	소유자
연회동 541-76호	대	미저촉	541-76호	10.0	북가좌동 31-7 황 의 영
연회동 542-20	"	"	542-20호	2.0	연회동 542-20 박 상 훈
연회동 542-81	"	"	542-81호	6.0	연회동산 118 최 욱 탄
<b>◎서대문구고시제38호</b> <b>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b>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연회동 55-1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서울외국인학교 체육관증축 다.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면적: 62,598㎡ 건물연면적: 기존25,552.32㎡, 급회2,700.66㎡ 계 28,252.98㎡ 라. 사업시행자: 연회동 55번지 지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지재단 이사 고 일 선 마. 착수예정일: 90.10. 바. 준공예정일: 92. 11.30 사. 수용할 토지: 없음 아. 허가도서: 별첨(생략)		
1. 서대문구공고 제90호(90.9.28)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공람공고한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0. 20. 서대문구청장					

<p>●도봉구고시제138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인가고시</p> <p>1. 아래와 같이 도봉구 공고 제115호('90.8.25)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아래 사업내 가. 사업내용</p>		<p>용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실 시인가하고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 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p>				
사업시행지	사업종류및사업명칭	규 모	사업기간	행정고시 일 자	지적고시 일 자	비 고
수유4동279의 190-279의2	도시계획사업 (도로) 수유4동 279-280 도로개설공사	B=6, L=110m φ450 L=110m	'90.9- '91.12	서고3호 (89.1.18)	서고3호 (89.1.18)	
창3동 449의 102-108	도시계획사업 (도로) 창3동 443의 3-449의9	B=10, L=78m φ600 L=78m	'90.9- '91.12	서고185호 (73.12.31) 건교9호 (87.1.21)	서고185호 (73.12.31) 건교9호 (87.1.21)	
번동 387의36 -387의 38	도시계획사업 (도로) 번동 458 도로개설	B=8, L=70m φ600 L=70m	'90.9- '91.12	건교9호 (87.1.21)	건교9호 (87.1.21)	
미아5동 375-15	도시계획사업 (도로) 미아5동 375 도로개설	B=10, L=15m φ600 L=15m	'90.9- '91.12	서고124 (88.1.19)	서고124 (88.1.19)	
미아3동 245 의44-산19의 88	도시계획사업 (도로) 미아4동 49- 변2동간 도로개설	B=15, L=150m φ450 L=300m	'90.9- '91.12	건교738 (83.12.24)	건교2453 (86. 6. 1)	
수유4동 588의 9	도시계획사업 (도로) 수유4동 566-558 도로포장	B=15, L=70m φ450 L=70m	'90.9- '91.12	서고3호 (89.1.18)	서고3호 (89.1.18)	
미아8동 731 의34-32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미아8동 734의34알 도로개설	B=6, L=20m	'90.9- '91.12	서고3호 (89.1.18)	서고3호 (89.1.18)	
수유3동 195 의13-195의14	도시계획사업 (도로) 수유3동 392 도로개설	B=6, L=70m φ450 L=70m	'90.9- '91.12	서고185호 (89.1.18)	서고185호 (89.1.18)	
창동 452의60 -산197의6	도시계획사업 (도로) 창동452번지 도로포장	B=6, L=150m φ600 L=150m	'90.9- '91.12	서고185호 (73.12.3)	서고185호 (73.12.3)	
미아2동 791의 3266-867의 114	도시계획사업(도로) 미아2동 867-791간 도로개설	B=6-8 L=270m φ450 L=60m 박스 1.5×1.5 L=80m	'90.9- '91.12	서고3호 (89.1.18)	서고3호 (89.1.18)	
<p>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지) :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서(별첨) 라. 위치도 및 계획명면도 :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p>			<p>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901-540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10. 19 도 봉 구 청 장</p>			

2024



물 건 지 조 서 (건물 및 부대공)

사업명 : 수유4동 279번지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수유4동 280-633	건물	세멘트브릭	33㎡	수유4동 280-63	이종성	수유4동 279-33	최기정	
2	" 279-174	담장	"	3㎡	" 279-174	임남호			
3	" 279-24	가건물	"	22㎡	" 279-33	최기정			
4	" 279-24	건	세멘트와즙	47㎡	" 279-33	최기정			
5	" 279-23	"	"	62㎡	" 279-23	이경택			
6	" 279-33	"	세멘트와즙	5㎡	" 279-33	최기정			
7	" 279-33	베란다	연적차면인	5㎡	"	"			
8	" 279-181	지장물	연적차면인	1 식	" 279-181	김성근			

물 건 지 조 서 (토 지)

사업명 : 창3동 443외3~449의 9 도로개설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창3동 448-79	도로		355㎡	동작구 창도동 36-1 대립APT 2-805	장영순			
2	" 449-108	전		124㎡	창동 501-65	강완석			
3	" 449-100	도로		101㎡		서울시			
4	" 445-7	도로		621.5㎡		서울시			

제182호 시

보 1990. 10. 25 43-33

물 건 지 조 서 (건물 및 부대공)

사업명 : 변동458번지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주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변동 387-353	주택	연와제면벽	4.7	변동 458-40	박상원			
2	" 387-36	"	"	43.8	" 457-29	최영숙			
3	" 387-36	"	"	3.2	" 458-32	박명운			
4	" 458-32 " 387-33	"	스래트브릭	10.5	" 458-32	"			
5	" 387-37	"	"	2.6	" 387-37	김진아			
6	" 387-37	"	연와제면조	24.9	" 387-37	"			
7	" 387-32	"	"	4.1	" 458-31	박순덕			
7	" 387-32	"	"	0.3	" 458-31	박순덕			
8	" 387-32	"	스래트브릭	2.3	" 458-31	"			
9	" 387-32	주택및 창고	"	15.1	" 458-31	"			
10	" 387-38	창고	스래트브릭	22	" 387-38	유병환			
11	" 387-38	주택	연와제면조	32.7	" 387-38	"			
12	" 387-67	확장실	스래트브릭	1	" 457-58	김홍선			
13	" 387-39	내문		1식	" 457-1	한정훈			
14	" 387-39	담장	브릭	18	" 457-1	"			

43-34

제1521호

1992. 10. 25

물 건 지 조 서 (건물 및 부대공)

사업명 : 미아5동 375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판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미아동375-15	건 물	세멘트블록스케트	33	도봉구 미아동375-15	이경희	근외당 설정 부천시 송내동 504-1	원대영 동업(주)	
		수 도 개량기		1 식					
		정 화 조		1 식					
		대 문		1 식					
		부 싱 비디오		1 식					

제1521호  
시

물 건 지 조 서 (토 지)

사업명 : 수유동 586~558번지간 도로 포장 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 원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판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수유동 558-9	조	717	717㎡	수유동 130-140	박성서			

제  
1990.10.25

물 건 지 조 서 (건물 및 부대공)

사업명 : 수유동 556-558번지간 도로포장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판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수유동 558-7	단 장	세멘, 몰탈	16㎡	수유동 558-7	채영수			

43-35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수유동 558-7	화장실		1 식	수유동 558-7	채영수			
	" 558-7	철 문		1 식	"	"			
2	" 558-57	담 장	세 편, 물 탈	36㎡	원동 148-294 진주주력 1동 102호	김사근			
3	" 558-56	"	"	35㎡	"	"			
	" 558-56	은행나무		2 주	"	"			
4	" 558-55	담 장	세 편, 물 탈	27㎡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72-4	정판덕			
5	" 558-17	"	"	41	수유동 558-17	유태건			
	" 558-17	나 무		17주	"	"			
6	" 558-16	담 장	세편물탈철강	6㎡	수유동 558-16	홍두식			
7	" 558-15	방		1식	수유동 558-15	이기홍			

## 물 건 지 조 서 (토 지)

사업명 : 미아8동 734-34앞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	면적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미아동 742-4	대	21	21	미아동 742-11	김창기	강동구 성내동 451 화양동지점	축산협동 조합중앙회	
2	" 742-20	대	6	6	"	"	"	"	
3	" 734-33	대	36	36	미아동 734-33	윤용훈			
4	" 734-32	대	36	36	성북구 안암동 29-1	하중호			

2025

물 건 지 조 서 (건물 및 부대공)

사업명 : 미아8동 734-34앞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번호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미아동 742-4	건물 (가옥)	세련와즈	19	미아동 742-11	김창기			
	"	담장	"	1식	"	"			
	"	대문	"	1식	"	"			
2	" 742-20	건물 (강독대)	"	1	"	"			
3	" 734-33	"	"	4	미아동 734-33	윤용훈			
4	" 734-33, 32	건물 (가옥)	"	29	미아동 734-33	윤용훈			
5	" 734-32	건물 (화장실)	"	1	성북구 종암동 29-1	하중호			
	"	담장	"	1식					
	"	대문	"	1식					

물 건 지 조 서 (토지)

사업명 : 수유3동 392번지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번호	지목	지적	원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수유동 195-13	대	129	87	수유동 195-13	박종수	저당 설정 수유동 195-13가 63-1	세계일보	195-34
							저당 설정 수유동 195-13가 93	한만련	
							저당 설정 수유동 195-13가 25	서울신문사	

제1521호 시

제1990 10.25 43-37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	수유동 195-14	대	136	80	수유동 195-14	이근배	근정당 설정 중구 남대문로2가 111 번지의 1	한국상업은행 (창동지점)	195-36
							근정당 설정 중구 남대문로2가 9의 1	국민은행 (쌍문동지점)	

물 건 지 조 서 (건물 및 부대금)

사업명: 수유3동 392번지의 1건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수유동195-13	건 물	적벽돌기와	62	수유동 195-13	박종수	근정당 설정 중구 남대문로3가63-1	세계일보	
		건 물	세멘트블록스래트	23		"	근정당 설정 중구 남대문로3가63	한 단련	
		창 고	세멘트블록스래브	3.5		"	근정당 설정 중구 남대문로1가 25	서울신문사	
		보일러실		1식		"			
		화 장 실		2식		"			
		담 장	세 멘 물 탈	13.5		"			
		정 화 조		1식		"			
		대 문		1식		"			
		수 도 계 량 기		1식		"			
		나 무		3주		"			
2	수유동195-14	건 물	적벽돌기와	64	수유동 375-14	이근배	근정당 설정 중구 남대문로2가 111번지의 1	한국상업은행 (창동지점)	

43-38

11521호 시

보 1990. 10. 25

2027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방	1 식	1 식		이근배	건축당 설정 주소 남대문2가 9의1	국민은행 (상문동지점)	
		정화조	1 식	1 식		"			
		나무	23 주	23주		"			
		담 장	새 펜돌담	27		"			
		대문	적벽돌지붕	1 식		"			
		화장실		1 식		"			
		창고		1 식		"			
		수도계량기		1 식		"			

물 건 지 조 서 (토 지)

사업명 : 창동452번지 도로포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창3동 451-1	전		153		서울시			
2	" 452-60	도로		699		서울시			
3	" 452-6	"		169	마포구 합정동 397-5	조광복			
4	" 461-2	"		218	남대문구 청량리동 235-11 미우APT 3동 208호	염성권			
5	" 452-4	"		347	연동 462-53	최건희 외3인			
6	" 461-8	"		46					
7	" 산200-3	임야		471	서대문구 포화동 1-1	한려부			

물 건 지 조 서 (건물 및 부대공)

사업명 : 창동452번지 도로포장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창3동 200-3	건 물	브릭/스레트	2	창3동 200-3	박철순			무허가건축 (54지주별도)

**구 공 고**

●**구로구공고제92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 규정에 의거 구로구 도시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

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안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	3	6	95	가리봉동38-1	가리봉동 602-68	

마.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신설 및 변경안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학교	시흥동산6-7일대	9,200	국민학교용지
기정	관악산자연공원	"	19,226,677	
변경	"	"	19,217,477	감 9,200㎡

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장소: 구로구청 동서경비파  
 나. 공람기간: 1990.10.24 - 90.11.7(14일간)  
 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내용과 같음

1990. 10

구로구청장

**시교육위원회고시**

●**교육위원회고시제36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68호('88. 12.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선일여자고등학교 교실증축 공사가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 및 선일여자고등학교 서무과에

비치하고 사후에 참고합니다.

1990. 10. 24

교육위원회 교육감

가. 준공사항

- 1)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240-1 번지 이대
-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선일여자고등학교 교실증축사업
- 3)사업의규모: 교 지 면 적- 32,363.675㎡중  
 건축면적- 242.88㎡  
 건축연면적- 1,772.42㎡
- 4)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240-1번지 학교법인 선일학원 이사장



5)사업기간 : 1987.6-1989.8.31

6)준공도면 : 도면생략.

●교육위원회고시제37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39호('87. 7.2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양정고등학교 이전 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 및 양정고등학교 서무과에 비치하고 사후에 참고합니다.

1990. 10. 24

시 교 육 위 원 회 교 육 감

가. 준공사항

1)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6단지내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정고등학교  
\* 이전 신축사업

3)사업의규모 : 교 지 면 적 - 승인면적  
39,670.4㎡  
준공면적  
39,669㎡

건축면적 - 7,185.58㎡

건축연면적 - 20,829.54㎡

4)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6단지 학교법인 양정의숙 이사장

5)사업기간 : 1987.3 ~ 1988. 2.28

6)준공도면 : 도면생략. 끝.

●교육위원회고시제38호

학교시설사업승인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471-2번지 일대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영훈학원 서무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10. 24

시 교 육 위 원 회 교 육 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471-2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영훈고등학교 수세식변소 증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471-2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1)교 지 면 적 : 28,338㎡

2)건축면적 : 기존건물 4,002.93㎡  
금회증축 133.2㎡  
계 4,136.13㎡

3)건물연면적 : 기존건물16,750.09㎡  
금회증축 575.10㎡  
계 17,325.19㎡

4)계 권 : 학교비 및 국고보조금

5)사 업 기 간 : 착공년월일 1990.10  
준공예정일 1991. 5.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수세식변소 증축으로 교육여건 개선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서(토지수용법 4조3항의 관계인)(토지조서) : 생략. 끝.

**경찰서공고**

●송파경찰서공고제1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0. 10. 25

송파경찰서장

장

직 인 등 록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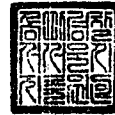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청소) : 송 파 경 찰 서

직 명 : 송파경찰서 서울시 지출원

사 용 개 시 일 : 1990. 10. 20

인 영



●노원경찰서공고제1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 경찰국 노원 경찰서 경리관 및 지출원의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

칙 제7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10. 25

노원경찰서장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노 원 경 찰 서

직 명 : 지 출 원

사 용 개 시 일 : 1990. 10. 25

인 영



**사 령**

공무국의 여행명령 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사회과	서기관	이서용	북경	'90.10.24 -10.31	시비 (2,301불)	제9차 아. 태지역 재활대회 참가

공무국의 여행명령 통보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생활체육과	지방행정 사무관	박종인	일본, 미국 캐나다	'90.10.27 -11.10 (15일간)	Y.M.C.A 부담	생활체육 시설의 관리운영 기업 등을 시찰
	지방건축 기사보	김영철	"	"	"	"

서울특별시장

**상수도사업본부사령**

©1990년 10월 20일자

9급 기술직 공무원 면직

령 제129호

성명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현직급
1	윤창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은평수도사업소	지방수도토목기원보 시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